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제2장 시정권고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 44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선 이후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약 70% 중반을 상회(2022년 기준 77.4%)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은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주류가 된 언론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뉴스통신 등 언론중재법에 포함되는 기성 인터넷 매체가 아닌,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 뉴스

소비의 새로운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2022년 위원회는 유튜브에 게재된 언론사 뉴스 콘텐츠의 조정대상보도 포함 여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 국회에서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범주에 유튜브 콘텐츠 등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그에 따라 수시로 대두되는 미디어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술적, 실무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구제제도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3,175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103건 감소한 것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와 카타르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에 언론보도가 집중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20. 1. 1. ~ 2022. 12. 31.)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청구건수	3,924	4,278	3,175

2 청구권별 현황

2022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432건(45.1%), 손해배상청구 1,009건(31.8%), 반론보도청구 653건(20.6%), 추후보도청구 81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청구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추후보도청구사건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0. 1. 1. ~ 2022. 12. 31.)

청구명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정정	1,983 (50.5)	1,832 (42.8)	1,432 (45.1)	5,247 (46.1)
반론	695 (17.7)	870 (20.3)	653 (20.6)	2,218 (19.5)
추후	114 (2.9)	204 (4.8)	81 (2.6)	399 (3.5)
손배	1,132 (28.8)	1,372 (32.1)	1,009 (31.8)	3,513 (30.9)
계	3,924 (100)	4,278 (100)	3,175 (100)	11,377 (1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1,857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14.2%), 방송 387건(12.2%), 신문 309건(9.8%), 뉴스통신 149(4.7%)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이 전체의 77.4%를 차지해 최근 3년 동안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20. 1. 1. ~ 2022. 12. 31.)

매체유형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신문	일간 신문		384 (9.8)	322 (7.5)	234 (7.4)	940 (8.3)
	주간 신문		122 (3.1)	131 (3.1)	75 (2.4)	328 (2.9)
방 송			465 (11.9)	495 (11.6)	387 (12.2)	1,347 (11.8)
잡 지			4 (0.1)	8 (0.2)	6 (0.2)	18 (0.2)
뉴스통신			247 (6.3)	216 (5.0)	149 (4.7)	612 (5.4)
인터넷신문			2,102 (53.6)	2,477 (57.9)	1,857 (58.5)	6,436 (56.6)
인터넷뉴스 서비스			596 (15.2)	609 (14.2)	450 (14.2)	1,655 (14.5)
기 타			4 (0.1)	20 (0.5)	17 (0.5)	41 (0.4)
계			3,924 (100)	4,278 (100)	3,175 (100)	11,377 (1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청구현황

2022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3,093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41건(1.3%), 재산상 손해 19건(0.6%), 사생활 침해 15건(0.5%), 음성권 및 성명권 침해 각 2건(0.1%) 등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20. 1. 1. ~ 2022. 12. 31.)

침해유형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명예훼손	3,778 (96.3)	4,123 (96.4)	3,093 (97.4)	10,994 (96.6)
초상권 침해	45 (1.1)	66 (1.5)	41 (1.3)	152 (1.3)
음성권 침해	6 (0.2)	13 (0.3)	2 (0.1)	21 (0.2)
성명권 침해	12 (0.3)	7 (0.2)	2 (0.1)	21 (0.2)
사생활 침해	7 (0.2)	12 (0.3)	15 (0.5)	34 (0.3)
재산상 손해	68 (1.7)	47 (1.1)	19 (0.6)	134 (1.2)
기 타	8 (0.2)	10 (0.2)	3 (0.1)	21 (0.2)
계	3,924 (100)	4,278 (100)	3,175 (100)	11,377 (100)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22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1,699건(53.5%)으로 전체 조정청구 3,175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일반단체 710건(22.4%), 기업체 441건(13.9%), 공공단체 100건(3.1%), 지자체 85건(2.7%), 언론사 39건(1.2%) 등의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청구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일반단체의 청구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20. 1. 1. ~ 2022. 12. 31.)

신청인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개인	2,187 (55.7)	2,569 (60.1)	1,699 (53.5)	6,455 (56.7)
국가기관	108 (2.8)	87 (2.0)	32 (1.0)	227 (2.0)
지자체	152 (3.9)	158 (3.7)	85 (2.7)	395 (3.5)

신청인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공공단체	140 (3.6)	105 (2.5)	100 (3.1)	345 (3.0)
일반단체	375 (9.6)	499 (11.7)	710 (22.4)	1,584 (13.9)
종교단체	98 (2.5)	48 (1.1)	28 (0.9)	174 (1.5)
기업체	688 (17.5)	674 (15.8)	441 (13.9)	1,803 (15.8)
언론사	51 (1.3)	78 (1.8)	39 (1.2)	168 (1.5)
교육기관	125 (3.2)	60 (1.4)	37 (1.2)	222 (2.0)
기타			4 (0.1)	4 (0.0)
계	3,924 (100)	4,278 (100)	3,175 (100)	11,377 (1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2년 접수된 3,175건의 조정사건 중 서울 8개 중재부가 2,377건(74.9%)을, 지역 10개 중재부가 798건(25.1%)을 접수·처리하였다. 지역중재부 접수 사건은 경기중재부 250건(7.9%), 대구중재부 114건(3.6%), 경남중재부 99건(3.1%) 순이었다. 경기중재부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이 인천광역시를 포함하고 있어 넓은 데다가,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0. 1. 1. ~ 2022. 12. 31.)

중재부 \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서울중재부	2,850 (72.6)	2,969 (69.4)	2,377 (74.9)	8,196 (72.0)
부산중재부	60 (1.5)	108 (2.5)	55 (1.7)	223 (2.0)
대구중재부	117 (3.0)	153 (3.6)	114 (3.6)	384 (3.4)
광주중재부	100 (2.5)	131 (3.1)	81 (2.6)	312 (2.7)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중재부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대전중재부		56 (1.4)	52 (1.2)	60 (1.9)	168 (1.5)
경기중재부		413 (10.5)	390 (9.1)	250 (7.9)	1,053 (9.3)
강원중재부		45 (1.1)	28 (0.7)	25 (0.8)	98 (0.9)
충북중재부		47 (1.2)	61 (1.4)	39 (1.2)	147 (1.3)
전북중재부		103 (2.6)	149 (3.5)	50 (1.6)	302 (2.7)
경남중재부		94 (2.4)	174 (4.1)	99 (3.1)	367 (3.2)
제주중재부		39 (1.0)	63 (1.5)	25 (0.8)	127 (1.1)
계		3,924 (100)	4,278 (100)	3,175 (100)	11,377 (100)

7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방법과 관련해 민원인이 이메일을 선호하는 경향은 전년에 이어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메일 접수 건수는 총 3,175건 중 1,948건(61.4%)이고, 이어 홈페이지(전자신청) 1,083건(34.1%), 우편 93건(2.9%), 방문 49건(1.5%), 구술 2건(0.1%) 순이다.

홈페이지(전자신청)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 내 전자신청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전자신청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익을 증진한 덕에 전년 대비 전자신청 시스템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 향후에도 대면 접수 방식의 비중은 최소화되고 이메일과 전자신청이 접수 경로의 비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경로별 청구현황

(2020. 1. 1. ~ 2022.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합계
2020		135 (3.4)	42 (1.1)	125 (3.2)		3,622 (92.3)	3,924 (100)
2021		144 (3.4)	160 (3.7)	858 (20.1)	10 (0.2)	3,106 (72.6)	4,278 (100)
2022		49 (1.5)	93 (2.9)	1,083 (34.1)	2 (0.1)	1,948 (61.4)	3,175 (1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2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949건(29.9%), 취하 796건(25.1%), 조정불성립결정 684건(21.5%), 기각 450건(14.2%), 각하 193건(6.1%) 직권조정 결정 103건(3.3%)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 불성립 및 기각, 취하(구제)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고, 신청 요건의 미비 등으로 각하 처리된 사건이 전체 사건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신청인의 단순 변심이나 다른 사정으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여 종결된 사건이 줄어들면서 미구제 취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0. 1. 1. ~ 2022.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0	3,924	1,245	166	99	891 [11]	275	34	1,029	185	67.8%
	%	31.7	4.2	2.5	22.7	7.0	0.9	26.2	4.7	
2021	4,278	1,221	146	73 [4]	894 [16]	596	132	838	378	62.7%
	%	28.5	3.4	1.7	20.9	13.9	3.1	19.6	8.8	
2022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29.9	2.2	1.1	21.5	14.2	6.1	21.6	3.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신청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2년 피해구제율은 67.6%로 전년의 62.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높아지고, 취하된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져 피해구제된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0 1. 1. ~ 2022.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0	3,924	309	3,615	2,451	67.8%
2021	4,278	728	3,550	2,225	62.7%
2022	3,175	643	2,532	1,712	67.6%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2.1%, 반론보도청구 31.7%, 추후보도청구 38.3%, 손해배상청구 24.9%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해 모두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및 각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 또한 높은 결과를 보였다. 2022년 기각으로 처리된 사건은 450건으로 전년의 596건에 비하면 절대적인 수는 감소했으나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각하 처리된 사건의 경우 그 수와 비율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 단체가 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된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재차 다량 신청하면서 법정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432 (100)	460 (32.1)	48 (3.4)	345 (24.1)	171 (11.9)	62 (4.3)	299 (20.9)	47 (3.3)
반론	653 (100)	207 (31.7)	23 (3.5)	106 (16.2)	127 (19.4)	58 (8.9)	104 (15.9)	28 (4.3)
추후	81 (100)	31 (38.3)	1 (1.2)	7 (8.6)	6 (7.4)	3 (3.7)	32 (39.5)	1 (1.2)
손배	1,009 (100)	251 (24.9)	31 (3.1)	226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계	3,175 (100)	949 (29.9)	103 (3.2)	684 (21.5)	450 (14.2)	193 (6.1)	686 (21.6)	110 (3.5)

*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정정보도

A언론사는 신청인 회사의 제품이 국외 특허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고, 국외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정부 부처에 납품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해당 제품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제품이고, 국외 제품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A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반론보도, 손해배상

B언론사는 신청인이 부하 직원에게 간접 폭행과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하 직원의 근태에 대해 지적했을 뿐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B언론사가 조정대상 보도를 열람 차단하고 별도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며,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3. 추후보도

C언론사는 신청인이 제자 성추행 및 인건비 유용 의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이 항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4. 손해배상

D언론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허위로 파악되고, 신청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신청인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의혹은 다수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본인의 허위 이력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D언론사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례 5. 손해배상

E언론사는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음식 배달과 관련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달 기사인 신청인의 모습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E언론사가 조정대상 보도를 열람차단하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1) 처리현황

2022년 손해배상청구 1,009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251건(24.9%), 직권조정결정 31건(3.1%), 조정불성립결정 226건(22.4%), 기각 146건(14.5%), 각하 70건(6.9%), 취하 285건(28.3%)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 피해구제로 종결된 취하 사건수와 각하 처리된 사건이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0. 1. 1. ~ 2022.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0	1,132 (100)	368 (32.5)	48 (4.2)	34 (3.0)	311 [6] (27.5)	55 (4.9)	24 (2.1)	240 (21.2)	52 (4.6)
2021	1,372 (100)	363 (26.5)	45 (3.3)	26 (1.9)	326 [6] (23.8)	237 (17.3)	39 (2.8)	226 (16.5)	110 (8.0)
2022	1,009 (100)	251 (24.9)	18 (1.8)	13 (1.3)	226 [5]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009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8건(1.8%)으로 전년 74건(5.4%)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 기사의 수정 및 열람차단 등 금전배상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구제된 조정사건 수의 비율은 52.0%로 전년의 46.6%에 비해 약 5.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측면에서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아진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20. 1. 1. ~ 2022.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20	1,132	38	3.4%
2021	1,372	74	5.4%
2022	1,009	18	1.8%

2) 청구액 및 조정액

2022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2,200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1,000만 원, 최저액은 50만 원이었다.

2022년 손해배상 인용빈도는 전년도 74건에서 18건으로 감소하였고, 인용 최고액 또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중앙액은 2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0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1,000만 원으로, 모 정치인의 캠프에서 일하던 신청인이 지속적인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다.

사례 6.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

F언론사는 신청인이 모 정치인 캠프에서 일하면서 지속적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초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F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0. 1. 1. ~ 2022.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0	5,000	158,450,000,000	481,480,644	15,000,000
2021	10	5,000,000,000	75,435,806	15,000,000
2022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0. 1. 1. ~ 2022.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0	10,000	20,000,000	4,009,394	1,000,000
2021	60,000	15,000,000	2,085,000	1,000,000
2022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2. 1. 1. ~ 2022.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1	500,000	10,000,000	3,250,000	2,250,000	2,000,000
초상권 침해	4	500,000	1,000,000	825,000	900,000	900,000
음성권 침해	2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성명권	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2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943건(93.4%)으로 예년과 유사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35건(3.4%), 프라이버시 침해 15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943건의 1.1%인 11건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반해,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유형의 경우 전체 66건의 10.6%인 7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52.0%)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등 사건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할 수 있다.

성명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범죄 혐의 보도에서 신청인들의 실명과 초상 등이 노출되어 기사 수정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중재부에서 직권조정 결정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7. 성명권 침해 손해배상

G언론사는 범죄 혐의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들의 실명과 초상 등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동의 없이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G언론사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조정대상 보도를 수정하고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가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943 (100)	231 (24.5)	29 (3.1)	219 (23.2)	142 (15.1)	70 (7.4)	223 (23.6)	29 (3.1)
초상권 침해	35 (100)	15 (42.9)	1 (2.9)	(0.0)	(0.0)	(0.0)	17 (48.6)	2 (5.7)
음성권 침해	2 (100)	2 (100)	(0.0)	(0.0)	(0.0)	(0.0)	(0.0)	(0.0)
성명권 침해	2 (100)	(0.0)	1 (50.0)	(0.0)	(0.0)	(0.0)	1 (50.0)	(0.0)
프라이버시	15 (100)	(0.0)	(0.0)	3 (20.0)	(0.0)	(0.0)	9 (60.0)	3 (20.0)
재산상 손해	11 (100)	3 (27.3)	(0.0)	4 (36.4)	3 (27.3)	(0.0)	1 (9.1)	(0.0)
기타	1 (100)	(0.0)	(0.0)	(0.0)	1 (100)	(0.0)	(0.0)	(0.0)
계	1,009 (100)	251 (24.9)	31 (3.1)	226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잡지(50.0%), 일간신문(47.4%), 주간신문(40.0%) 등 전년대와 동일하게 오프라인 매체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하된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된 비율은 뉴스통신(32.9%), 인터넷신문(27.5%), 인터넷뉴스서비스(13.6%) 등 온라인 매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이는 피해자들이 보도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 수정조치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신청인 또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구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신문	일간 신문	234	111	13	68	10		28	4
		(100)	(47.4)	(5.6)	(29.1)	(4.3)		(12.0)	(1.7)
	주간 신문	75	30	8	25	2		6	4
		(100)	(40.0)	(10.7)	(33.3)	(2.7)		(8.0)	(5.3)
방 송		387	107	12	115	56	35	31	31
		(100)	(27.6)	(3.1)	(29.7)	(14.5)	(9.0)	(8.0)	(8.0)
잡 지		6	3		2				1
		(100)	(50.0)		(33.3)				(16.7)
뉴스통신		149	45		25	23	6	49	1
		(100)	(30.2)		(16.8)	(15.4)	(4.0)	(32.9)	(0.7)
인터넷신문		1,857	532	59	322	286	107	511	40
		(100)	(28.6)	(3.2)	(17.3)	(15.4)	(5.8)	(27.5)	(2.2)
인터넷 뉴스서비스		450	121	11	119	71	38	61	29
		(100)	(26.9)	(2.4)	(26.4)	(15.8)	(8.4)	(13.6)	(6.4)
기 타		17			8	2	7		
		(100)			(47.1)	(11.8)	(41.2)		
계		3,175	949	103	684	450	193	686	110
		(100)	(29.9)	(3.2)	(21.5)	(14.2)	(6.1)	(21.6)	(3.5)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명예훼손으로 접수처리된 사건의 경우 전체 3,093건 중 924건(29.9%)이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고, 653건(21.1%)이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다.

초상권 침해로 접수처리된 사건은 전체 41건 중 19건(46.3%)이 조정성립, 19건(46.3%)이 피해구제로 취하되었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093	924	101	675	442	193	653	105
	(100)	(29.9)	(3.3)	(21.8)	(14.3)	(6.2)	(21.1)	(3.4)
초상권 침해	41	19	1				19	2
	(100)	(46.3)	(2.4)				(46.3)	(4.9)
음성권 침해	2	2						
	(100)	(100)						
성명권 침해	2		1				1	
	(100)		(50.0)				(50.0)	
사생활 침해	15			3			9	3
	(100)			(20.0)			(60.0)	(20.0)
재산상 손해	19	4		6	5		4	
	(100)	(21.1)		(31.6)	(26.3)		(21.1)	
기타	3				3			
	(100)				(100)			
계	3,175	949	103	684	450	193	686	110
	(100)	(29.9)	(3.2)	(21.5)	(14.2)	(6.1)	(21.6)	(3.5)

* () 안의 숫자는 %

사례 8. 명예훼손

H언론사는 갑호소 상급자인 신청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청인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폭언을 한 적이 없고 감찰 또한 진행된 바가 없다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H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인터넷 기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9. 초상권 침해

I언론사는 백신 접종 관련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예방 접종 중이던 미성년자 신청인의 모습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신청인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뿐더러 친권자의 동의도 없이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I언론사가 해당 보도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열람차단하고 손해배상금 9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 결과

신청인 유형의 과반(53.5%)을 차지하는 개인이 청구한 1,699건의 사건 중 520건(30.6%)이 조정성립되었고, 413건(24.3%)이 열람차단 및 보도게재 등으로 피해 구제되어 취하되었으며, 392건(23.1%)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조정성립률은 공공단체(64.0%), 지자체(58.8%), 교육기관(51.4%), 언론사(5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국가기관(50.0%), 종교단체(28.6%), 언론사(28.2%), 기업체(2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개인		1,699	520	56	392	204	44	413	70
		(100)	(30.6)	(3.3)	(23.1)	(12.0)	(2.6)	(24.3)	(4.1)
국가기관		32	8	1	16			7	
		(100)	(25.0)	(3.1)	(50.0)			(21.9)	
지자체		85	50	5	21			9	
		(100)	(58.8)	(5.9)	(24.7)			(10.6)	
공공단체		100	64		17			7	12
		(100)	(64.0)		(17.0)			(7.0)	(12.0)
일반단체		710	154	8	89	239	141	77	2
		(100)	(21.7)	(1.1)	(12.5)	(33.7)	(19.9)	(10.8)	(0.3)
종교단체		28	8		8			8	4
		(100)	(28.6)		(28.6)			(28.6)	(14.3)
기업체		441	102	28	124	6	6	157	18
		(100)	(23.1)	(6.3)	(28.1)	(1.4)	(1.4)	(35.6)	(4.1)
언론사		39	20	5	11	1	2		
		(100)	(51.3)	(12.8)	(28.2)	(2.6)	(5.1)		
교육기관		37	19		6			8	4
		(100)	(51.4)		(16.2)			(21.6)	(10.8)
기타		4	4						
		(100)	(100)						
계		3,175	949	103	684	450	193	686	110
		(100)	(29.9)	(3.2)	(21.5)	(14.2)	(6.1)	(21.6)	(3.5)

*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74.9%(2,377건)를 처리한 서울중재부의 경우 706건(29.7%)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530건(22.3%)은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509건(21.4%)에 대해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며, 338건(14.2%)은 기각결정, 176건(7.4%)은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지역중재부는 전체 사건의 25.1%(798건)를 처리하였고, 이중 243건(30.5%)이 조정성립, 156건(19.5%)이 피해구제를 이유로 한 취하, 175건(21.9%)은 조정불성립 결정, 112건(14.0%)은 기각결정, 17건(2.1%)은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2. 1. 1. ~ 2022.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서울	2,377	706	59	509	338	176	530	59
	(100)	(29.7)	(2.5)	(21.4)	(14.2)	(7.4)	(22.3)	(2.5)
부산	55	13		12	18	3	9	
	(100)	(23.6)		(21.8)	(32.7)	(5.5)	(16.4)	
대구	114	34	20	18	3	3	34	2
	(100)	(29.8)	(17.5)	(15.8)	(2.6)	(2.6)	(29.8)	(1.8)
광주	81	15	2	20			19	25
	(100)	(18.5)	(2.5)	(24.7)			(23.5)	(30.9)
대전	60	4		15	6	6	24	5
	(100)	(6.7)		(25.0)	(10.0)	(10.0)	(40.0)	(8.3)
경기	250	111	16	64	1	2	45	11
	(100)	(44.4)	(6.4)	(25.6)	(0.4)	(0.8)	(18.0)	(4.4)
강원	25	8	2		10	3	2	
	(100)	(32.0)	(8.0)		(40.0)	(12.0)	(8.0)	
충북	39	12		16			11	
	(100)	(30.8)		(41.0)			(28.2)	
전북	50	24	3	9			10	4
	(100)	(48.0)	(6.0)	(18.0)			(20.0)	(8.0)
경남	99	14	1	8	74		2	
	(100)	(14.1)	(1.0)	(8.1)	(74.7)		(2.0)	
제주	25	8		13				4
	(100)	(32.0)		(52.0)				(16.0)
계	3,175	949	103	684	450	193	686	110
	(100)	(29.9)	(3.2)	(21.5)	(14.2)	(6.1)	(21.6)	(3.5)

* () 안의 숫자는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라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소비 형태는 물론 언론사의 송출 방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언론사도 이러한 환경에 발맞춰 방송에서 보도한 뉴스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뉴스는 SNS 등의 서브채널을 통해 독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인격권 침해와 그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신청인의 97.2%, 피신청인의 8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신청인의 46.0%, 피신청인의 55.9%가 ‘스스로 언론임을 표방하는 유튜버가 명예훼손적 뉴스를 올린 경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13년 대법원은 이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21년 위원회가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신청인의 94.1%, 피신청인의 5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조정대상을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콘텐츠는 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주된 견해였다. 그러나 2022년 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대상 매체 기준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언론사가 기존의 언론보도와 함께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유튜브 보도를 조정대상으로 함께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언론피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실무 처리방안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급격하게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실무상 노력만으로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 검색엔진 등 계속된 뉴미디어의 등장 및 기존 미디어의 융합 등 미디어 환경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사례 11.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1

J언론사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의료분쟁 사건을 보도하면서, 환자가 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J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를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재된 보도영상도 함께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

K언론사는 축제에 참석한 신청인들의 모습을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게재하였고, 신청인들은 해당 사진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K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사진 삭제와 함께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평가

2022년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조정신청 사건의 수는 전년 4,278건에서 대폭 감소한 3,175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2022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전년 대비 약 5% 상승한 67.6%를 기록하였는데, 이로써 하향 추세에 있었던 위원회 피해구제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7.9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가 74.8점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먼저,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하락한 주된 이유는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카타르 월드컵 등 국가적인 행사가 빈번해 이와 관련한 뉴스가 생산 유통되면서 여타 사건사고 뉴스 등 법익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뉴스의 비중이 줄어든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뉴스 소비방식의 변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들이 언론보도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통하기 시작했고, 뉴스 이용자들이 유튜브에서 ‘뉴스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전문'을 표방하는 채널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그로인한 피해의 구제 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건수 감소의 이유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언론조정 중재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기성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물에도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했다. 2022년에는 부장판사·변호사·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무적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23년 위원회는 정부의 미디어 관련 법체계 정비, 통합부처 설립 추진 움직임 및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 미디어 정책 기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자 한다.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개인 채널의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원회 조정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 바, 해당 영상 콘텐츠의 피해구제 방안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실효성 차원에서의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문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또한 조정 전·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당사자들의 조정 절차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전 중재부가 공유해 조정 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이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내역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지면매체의 경우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정권고 대상이 인터넷 기사인 때에는 결정문에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침해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명기(비식별 처리, 수정, 삭제 등)하여 송부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체 특성상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속적인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익침해 보도가 온라인 공간에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언론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2,682개 매체를 모니터링하여 400개 매체를 대상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으로 총 1,239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모니터링 대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을 참조하여 ①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법익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매체별 심의 적합성을 반기별로 검토하여 업데이트한 세부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22년 총 12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내려진 총 1,239건의 시정권고 결정 중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 결정은 1,164건 이었고, 이 가운데 언론사가 시정권고 결정 내용을 수용하여 수정이나 삭제한 경우 (이하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는 789건으로 집계되어,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은 67.8%로 나타났다.

표 21. 2022년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

(2022. 1. 1. ~ 2022. 12. 31.)

수용 여부	수용		불수용	계
	수정	삭제		
결정건수 (%)	462 (39.7)	327 (28.1)	375 (32.2)	1,164 (100.0)
	789 (67.8%)			

*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지면매체 대상 시정권고 결정 75건 제외

이와 더불어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포함하여 4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안이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리, 모니터링 필요성 등에 관한 발제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실무에 적극 참고하였다.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2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보호 등'이 514건 (4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 뒤로 기사형 광고 209건(16.9%), 자살 관련 보도 108건(8.7%), 기사 제목 59건(4.8%), 범죄사건 보도 등 56건(4.5%), 신고자 등 보호 52건(4.2%), 차별 금지 50건(4.0%)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신고자 등 보호,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등에 대한 시정권고가 늘어났는데,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사건 관련 보도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경우, 장애 차별적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부각한 경우, 대형 참사를 다루면서 관련 사진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경우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0. 1. 1. ~ 2022.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20	935 (100)	188 (20.1)		28 (3.0)	24 (2.6)				17 (1.7)	110 (11.8)		2 (0.2)	43 (4.6)	112 (12.0)	30 (3.2)	37 (4.0)	66 (7.1)	102 (10.9)	157 (16.8)	19 (2.0)	
2021	1,291 (100)	517 (40.0)		101 (7.8)	70 (5.4)	1 (0.1)				4 (0.3)		29 (2.3)	34 (2.6)	156 (12.1)	47 (3.6)	29 (2.3)	31 (2.4)	39 (3.0)	182 (14.1)	51 (4.0)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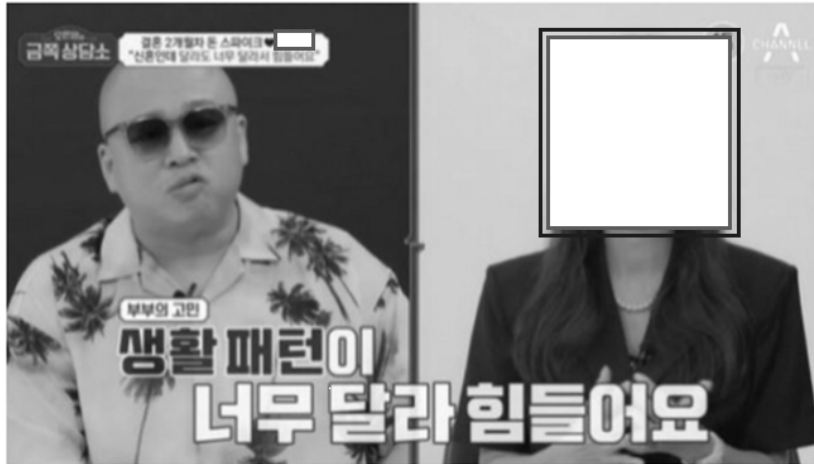
‘사생활 보호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514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의 517건(40.0%)과 비슷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또는 유명 연예인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표한 보도,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인물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을 보도 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가족(배우자)의 초상과 성명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인물이 과거 방송에 출연하여 초상과 성명이 공표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남편)에 대한 부정적 기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수인해야 할 의무 또한 없으므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례 1. 사생활 보호 등

□과 방송도 나왔는데... 돈스파이크 결혼 전후로도 마약

📄 ✉ 📌 📎 🖨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결혼 전후로도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오후 8시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돈스파이크는 지난 4월부터 강남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호텔 파티룸을 빌려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남녀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으며, 당시 공범 중 한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면서 돈스파이크의 범행도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6월 6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신혼 3개월이지만 결혼 전후로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8월 26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아내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망상이 많다. 머릿 속에 4명이 회담하면서 산다.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4중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하 생략)

- ▶ 유명 작곡가 겸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배우자의 초상과 성명을 여과 없이 공표함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나. 신고자 등 보호

위원회는 ‘신고자 등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총 5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해당 조항을 제정한 이래 첫 적용 사례로 파악됐다. 이들 중 36건(69%)은 아동학대사건 관련 수사과정에서 ‘진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경우였고, 나머지 16건(31%)은 가정폭력사건 관련 보도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경우였다. 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아 심의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보도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적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례 2. 신고자 등 보호

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 []는 다 봤다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재판에는 []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부부는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 숨진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준형 조은래 김용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인 C양(8)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다.

부부는 1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3월 2일의 범죄사실이 경찰 측 주장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여러 번 때렸다고 봤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A씨는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C양을 화장실에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다. 샤워가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양은 사망했거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의 진술이 판단의 토대가 됐다.

[]은 C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뤄진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는 []고 증언했다. 또 “[]”고 말했다.
딸을 따뜻한 물로 씻겼다는 A씨 주장과 달리 C양이 []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다. [] 등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다.
[]은 C양을 발견할 당시 이미 사망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 진술한 것이다.
재판부는 [] 재판부는 []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 ▶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에 진술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진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함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다. 차별 금지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차별 금지 관련 심의기준을 적용해 50건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의 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중 상당수는 '눈먼 돈', '결정 장애'와 같이 장애를 부정적인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이를 부각한 경우였다.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 보도에서 관용적으로 언급 되는 장애 차별적 표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사례 3. 차별 금지

실업급여는 '눈먼 돈?'... 난감한 고용부

제도악용 반복수급 제동 시급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우려 커져
5년간 3회 타연 감액바중 늘어
고용부 개선안은 국회서 낮잠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A씨는 매년 최소 180일 가량을 일한 뒤 나머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A씨가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무려 8519만원에 달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을 웃돈다. 지급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A씨 뿐 아니라 22년 연속 총 8470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고, 20년 연속 8177만원을 타간 이도 있다. 나머지 7명의 수급자들도 모두 18년 연속 8000만~8100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들이 이렇듯 실업급여를 매년 반복적으로 타갈 수 있던 것은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5개월 중 고

구직급여 신청·수혜 현황 (단위: 명, 억원)

기간	신규 신청자	수혜자	지급액
2021년 9월	7만8513	61만1907	9754
10월	7만8390	56만4660	8877
11월	8만8556	53만7260	8224
12월	10만1899	52만9086	8114
2022년 1월	18만6732	60만1385	8814
2월	9만4356	60만7759	8784
3월	13만2616	66만7930	1336
4월	9만2829	65만1975	9722
5월	8만4572	63만5553	13150
6월	8만4967	61만4850	9557
7월	9만9576	61만3015	9136
8월	8만1082	60만2998	9863
9월	8만652	57만1288	9261

고용노동부 자료

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매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5%대에 달한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은 2018년 139만명에서 2020년 178만명까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매일 8000억~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복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고 실업급여에 의존해 구직의욕을 꺾는 상황을 막으려면 반복수급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가 잠증하자 반복수급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5년 간 3회 이상 수급부터

구직급여 수급액의 감액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3회면 10%, 4회면 25%, 5회면 40%, 6회면 50%가 감액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대기기간도 늘렸다. 또, 단가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용보험율을 0.8%에서 1.0%으로 0.2%포인트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국회다.

개선안이 벌써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올해 5월 한 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확대하라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과 최근 국정

감사에서 나온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발언에 대한 야당의 견찰 고발 등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어려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형 등 규모가 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화조사를 실시, 199명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9억85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사업주 공모형의 적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3.5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9300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라. 재난 보도

2022년 ‘재난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20건으로 모두 ‘이태원 참사’를 다룬 보도였다. 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참사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열악한 사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상자의 신체가 드러난 모습 등을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보도목적을 넘어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4. 재난 보도

[속보] 핼로윈 인파몰린 이태원서 최소 30명 이상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 📄 🔍 가 가



31일 핼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에 몰린 인파로 인해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건물 뒷편으로 오후 10시 즈음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신고 일시는 오후 10시 15분께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30명 이상의 심정지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다.

- ▶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심폐소생 중인 압사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신체가 드러난 현장 사진을 공표
-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마.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20년 157건, 2021년 182건에 이어 2022년에는 209건을 기록하였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독자들은 이에 대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과장된 내용이나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사실로 오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바이라인과 함께 상세한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사례 5. 기사형 광고

새이름 ‘[] 병원’ 확장이전 영유아~갱년기까지 ‘맞춤 진료’

[] 역암 ‘이사’

국내 유일 자궁근종 7대 치료 가능

[] 의료재단 [] 병원이 14일
[]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

[] 역암으로 확장
이전해 진료를 시작했다.

새로 단장한 [] 병원’은 1993년
[]에서 출발해 2000년 []
[]지역 최초로 여성 전문병원시대를 연
[] 병원을 발판 삼아 영유아부터
갱년기까지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 진료를 선보일 계획이다.

[] 병원은 산부인과, 난임, 소아
청소년과, 외과(유방·갑상선), 내과, 가
정의학과 등 기존 8개 진료 분야에서 혈
관외과, 대장항문외과, 안과, 피부과,
통증관리실 등을 신설해 진료분야가 13
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에
따른 다양한 질환에 대한 협진 체계와 중
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대
장·항문질환, 백내장 치료 등이 가능해
졌다.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도 내
년 중 신설될 예정이다.

자궁근종 치료에는 로봇수술(4세대
다빈치 Xi)을 도입했다. 단일 병원으로
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궁근종에 관한
7대 치료(로봇수술, 하이푸, 복강경, 자
궁내시경, 혈관조영술(내년예정), 개복
술, 약물치료)가 가능해져 환자의 나이,
임신 가능성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진료



[] 병원이 []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 역 2번 출구 앞
으로 확장 이전했다. [] 병원 제공

가 이뤄진다.

건강검진실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최
신 MRI, CT, 유방단층촬영기(3D MAM
MO), 영상의학장비(C-Arm) 등을 새로
갖춰 난소암, 유방암 등 각종 질환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대 규모(70여 실)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을 두루 갖췄다. 임신부·영유아 문화·교
육 공간인 []에는 ‘임산부
전용 수영장’이 마련됐다. 이곳에선 태교
요가실, 요리강의실 등도 있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병원 내 상가 []에는 출산·
육아용품 편집숍(탈츠), CGV, 키즈카
페, 식당·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
료·쇼핑·문화·교육 등이 접목된 공간으

로 임산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병원은 현재 []에서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으
로, 내년 30주년을 맞아 의료진과 진료
과목 등을 더욱 확충해 상반기 중 ‘그랜
드 오픈’할 계획이다.

[] 이사장은 [] 병원은 출
산부터 생애 전환기(갱년기) 질환까지 치
료, 예방, 관리를 통한 생애 전주기 진료
는 물론 의료, 생활, 문화를 접목한 최초
의 ‘라이프케어’가 이뤄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한 삶과 생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 병원은 []
[]에 있으며 []
[] 역 2번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 기자

▶ 원 보도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3 매체 유형별 분석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신문이 1,083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통신 81건(6.5%), 일간지 65건(5.3%)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90%가 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쇄 매체는 매우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보도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나, 반면 기사의 즉각적인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대다수의 시정권고 대상 매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각종 법익침해에 대하여 언론사의 자발적인 조치(비식별 처리·수정·삭제 등)를 당부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권고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표 2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0. 1. 1. ~ 2022.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 체 유 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0	935 (100)	12 (1.3)	65 (6.9)	2 (0.2)		57 (6.1)	793 (84.8)	6 (0.6)
2021	1,291 (100)	8 (0.6)	32 (2.5)	2 (0.2)	1 (0.1)	73 (5.6)	1,172 (90.8)	3 (0.2)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 () 안의 숫자는 %

4 법익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2년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매체는 인터넷 신문 9곳, 뉴스통신 1곳으로, 해당 매체들이 받은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총 264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결정건수 1,239건의 2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전체 매체가 4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법익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전체 심의 대상 매체에 시정권고 현황 및 주요 시정권고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시정권고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시정권고 심의기준 정비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우선 가정폭력사건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자 및 주변인의 신원 공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유발, 자극적인 표현 또는 불필요한 폭력 장면 노출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심의기준에 담았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의기준상 용어가 ‘성폭력범죄’와 ‘성폭력’으로 각각 달라 그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규정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을 다루는 보도에 한정하지 않고 법익침해가 우려되는 다양한 사안에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용어를 ‘성폭력범죄’로 통일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정비 내역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 4 조(성폭력피해자 보호) ①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이나 성희롱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가정폭력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②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제3절 평가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17년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다소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1,200건 이상(2018년 1,275건, 2019년 1,288건, 2021년 1,291건, 2022년 1,239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기반 매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사 간 과도한 클릭 경쟁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전파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롭게 발생하는 법익침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심의기준을 보완·정비해 나가는 한편,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공감대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2022년에는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대상 인터넷 보도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비율, 즉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이 67.8%를 기록했다. 이는 시정권고의 취지와 근거를 언론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문 양식을 개선하고, 동일 법익침해 재발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 촉구 조치 등 위원회의 다각적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정권고 결정 수용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시정권고제도 운용에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심의기준 개정과 더불어 세부 유형별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사형 광고 심의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의료법」 근거) 관련 보도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이상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근거) 관련 보도로 확대하고,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익침해 사안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심의로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아동·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가정·성폭력 및 재난 피해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관점에서 관련 심의기준을 점검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교육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정권고 관련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언론사 대상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홍보와 의견 청취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힘을 예정이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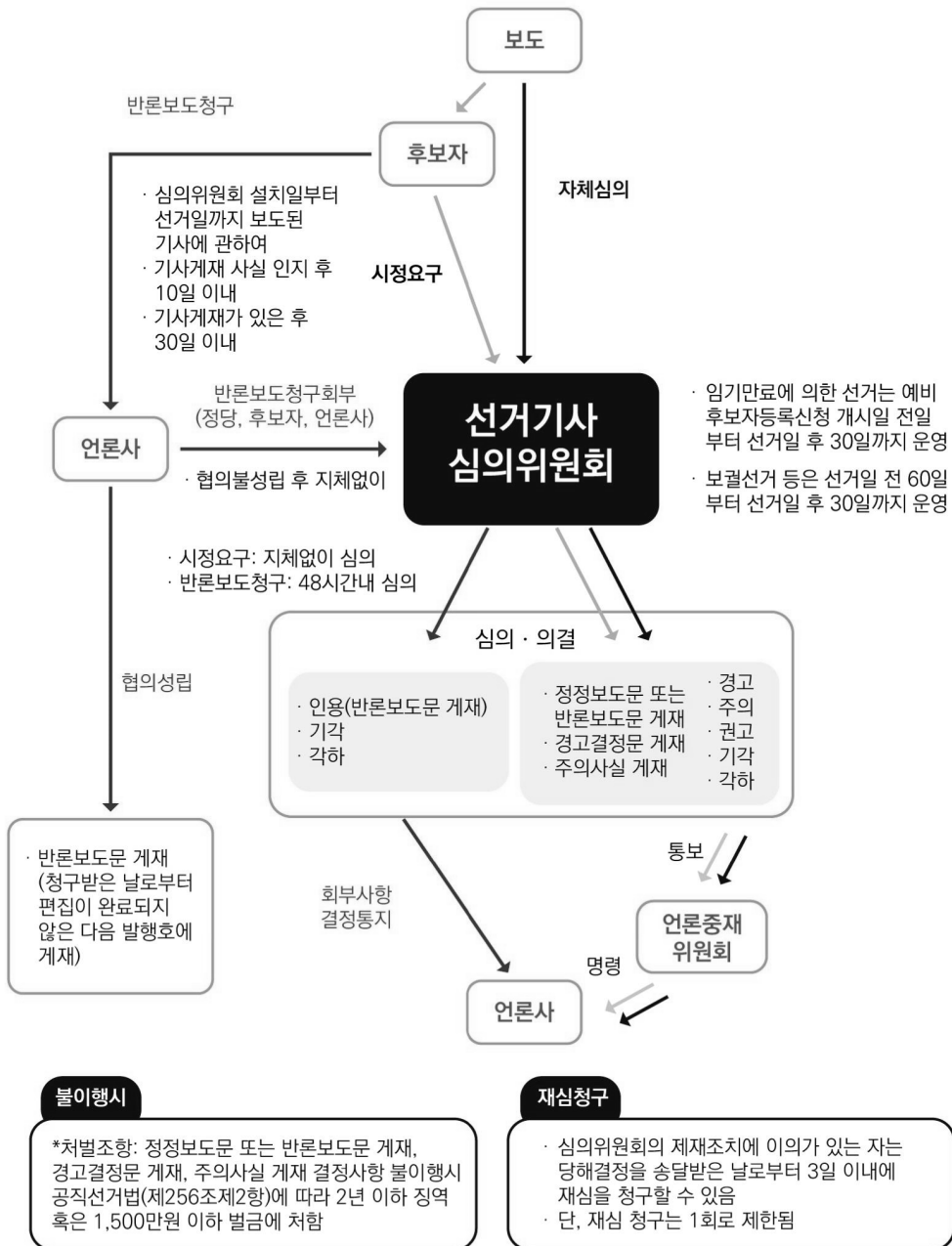
심의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체심의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상정한 안전에 대해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시정요구심의를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시정을 요구한 안전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의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과 언론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위 세 가지 유형의 심의를 거친 모든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불공정 보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의기구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을 꾀하는 한편, 선거심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심의기준의 준수를 촉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심의·의결 흐름도

■ 심의절차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약 9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홍성무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조원봉	(전) 인터넷선거정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윤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국민의힘
	김경환	(현)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대광	(현) 김대광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남영진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기자협회
	엄기홍	(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원영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국민의힘 추천에 의해 위촉된 유정화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2021. 11. 26. 사퇴함에 따라 최영훈 위원을 재추천 받아 2021. 12. 6.자로 위촉함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회의



나. 심의·의결현황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447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134개, 기타 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211개, 월간지 22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체심의 73건, 시정요구심의 12건 등 총 85건을 의결하여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73건 가운데, 주의사실 게재 4건(5.5%), 경고 17건(23.3%), 주의 49건(67.1%), 권고 2건(2.7%)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안건 1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1건(42.5%),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42건(57.5%)이었고, 보도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40건(54.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12건(16.4%),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후보자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보도한 일반선거기사 10건(13.7%), 게재가 제한된 광고 9건(12.3%), 객관성이 결여된 인터뷰 보도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평이 각 1건(1.4%)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43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간지 18건(24.7%), 뉴스통신 6건(8.2%), 종합주간지 및 지역주간지 각 3건(4.1%) 순이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총 12건이었고, 대상 매체는 모두 중앙일간지였다.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심위는 ‘경고’ 3건, ‘주의’ 2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표 24.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1. 7. 11.~2022. 4. 8.)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일 간	중앙	18	7	11		1	9	1		7		1	3	14		
	지역	43	20	23		7	23		1	10	2	3	11	26	2	1
주 간	종합	3	2	1		1	1		1				1	2		
	지역	3	2	1		1	1		1				2	1		
뉴스통신		6		6			6							6		
계		73 (100)	31 (42.5)	42 (57.5)	0 (0.0)	10 (13.7)	40 (54.8)	1 (1.4)	1 (1.4)	12 (16.4)	9 (12.3)	4 (5.5)	17 (23.3)	49 (67.1)	2 (2.7)	1 (1.4)

● 시정요구

간별	의결 건수	결정내용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중앙 일간지	12 (100)	0 (0.0)	0 (0.0)	0 (0.0)	0 (0.0)	3 (25.0)	2 (16.7)	0 (0.0)	0 (0.0)	7 (58.3)	0 (0.0)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사례)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



신영대
(국회의원(대전·세종·충남))

3주간의 20대 대선 본 선거운동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선거운동 초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가 전주, 익산, 군산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을 나뉘어 방문했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역할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들에서 전북도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해왔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국 최고 지지를 보내며 전북발전을 이끌고,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북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기후변화와 위기 등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과거 군부독재와 같은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전북선택 중요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을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차에도 과반에 육박하는 국정지지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허물러에 비유하고 5년짜리 정권이 법 없이 날뛰는 망언을 일삼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역행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란 사실이 명약관화한 이유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마음대로 대통령 육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정치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먼지 털이식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전북은 큰 진전을 이뤘다. 심수 년째 정체되었던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하며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수도 자리매김할 예정이고, 신산업으로서 탄소 소재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번 정부에서 전북지역 출신 장·차관이 수십여명 배출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해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20대 대선에서 전북의 저력을 투표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전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다.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전북도민들은 경선에서 흔들리는 이재명 후보를 확고하게 밀어주며 호남경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북에 각별함을 표시하며 대통령 후보

로 처음으로 전북을 2박 3일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다. 전주, 익산, 부안, 남원 등 전북 곳곳을 누비며 전북에 대한 비전도 발표했다. 이번 본 선거운동 기간 방문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외된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라는 대전환의 발상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북도약 기회로

하지만 전북도민들의 선택은 지엽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과 달리 2016년 20대 총선에는 민주당에 따طم한 회초리를 들었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엇박자 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초접전 선거일 수록 전북의 역할과 가치는 빛이 난다. 전북의 선택이 20대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을 스스로 만들었던 전북도민이 20대 대선에서 전북발전을 약속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전북 도약의 새로운 디딤돌을 마련할 때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2월 21일자 15면 “전북의 봄을 위해, 대통령은 이재명”)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여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2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2022년 상반기에는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2022년 3월 9일/ 2022년 6월 1일)가 치러졌다. 3월 9일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실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었고, 6월 1일에는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다. 위원회는 선심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를 20여 일 일찍 출범하여, 1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운영하며 세 선거의 선거기사를 모두 심의하였다.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김선중	(현)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윤여진	(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위원	박은태	(현)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국민의힘
	조원봉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호영	(현)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
	박문호	(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정일용	(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기자협회
	최수호	(전) YTN 해설위원 실장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회의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나. 심의·의결현황

2022년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총 442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134개, 기타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206개, 월간지 22개, 뉴스통신 12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재·보궐선거는 지역일간지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 및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각 1건씩 발생하였고, 모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자체심의 65건, 시정요구심의 3건 등 총 68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65건 가운데, ‘경고결정문 게재’ 3건(4.6%), ‘주의사실 게재’ 7건(10.8%), ‘경고’ 14건(21.5%), ‘주의’ 39건(60.0%), ‘권고’ 1건(1.5%)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1건(1.5%)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3건(81.5%),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12건(18.5%)이었다. 보도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선거기사가 33건(50.8%)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나 후보자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부각한 기사가 위 유형에 포함된다. 그 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 12건(18.5%), 제한된 광고 게재 10건(15.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또는 기고문 게재 8건(12.3%), 불공정한 인터뷰 및 인용기사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게재가 각 1건(1.5%)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 30건(46.2%), 지역주간지 27건(41.5%)으로 지역지를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가 전체 결정의 87.7%를 차지했고, 그 외 뉴스통신 5건(7.7%), 중앙일간지 2건(3.1%), 종합주간지 1건(1.5%) 순이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대상 매체는 지역일간지 1건, 지역주간지 2건이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대상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심의하여 ‘반론보도문 게재’ 2건과 ‘경고’ 1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국회의원	3. 9. 실시 (5)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6. 1. 실시 (7)	대구 수성구를, 인천 계양구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표 25.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2. 1. 8. ~ 2022 7. 1.)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2 (100)	1 (50.0)	1 (50.0)	0 (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0 (0.0)	0 (0.0)

표 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2. 1. 31. ~ 2022 7. 1.)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일 간	중앙	2	1	1		1				1				2		
	지역	30	24	6	15	6			4	5	2	3	8	16	1	
주 간	종합	1	1				1							1		
	지역	27	24	3	16	3		1	3	4	1	2	3	20		1
뉴스통신		5	3	2	2	2			1			2	3			
계		65 (100)	53 (81.5)	12 (18.5)	33 (50.8)	12 (18.5)	1 (1.5)	1 (1.5)	8 (12.3)	10 (15.4)	3 (4.6)	7 (10.8)	14 (21.5)	39 (60.0)	1 (1.5)	1 (1.5)

● 시정요구

간별	의결 건수	결정내용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각하
지역일간지	1					1					
지역주간지	2		2								
계	3 (100)	0 (0.0)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사례 5.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사례)

‘정찬부’ 고령군수 출마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4만 인구, 5천억 예산 약속
지역상이 살라기에 ‘사활’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 및
강정고령보 개통

관광객 유치 위해
다산면관광수익단지 조성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위해 권한 부여

저의 목표는 4050으로 4만 인
구, 예산 5천억 달성으로 현재
된 지역 상가를 살리겠습니다.
고령군 발전을 누구보다 격
정하며, 한평생 살아온 고령사
랑 ‘정찬부’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령군수란! 누리는 자
리가 아니라, 그저 군민들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자리라
고 생각합니다.

공정행정과 냉철한 판단력·
소신·투명성 등에서 그 누구
보다 경쟁력예산, 자신이 있습
니다.

희망의 상향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은 의지, 다
양한 사업을 경험한 토대로 지
역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
다.

관내에는 수많은 관광지가

있지만, 대다수가 운영비도 충
당되지 않아, 매년 엄청난 운
영비와 보수비 부담으로 향후
재정으로 다가가게 되는 명암관
외(明암外) 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수익사업을 통해 일
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군수해 채움대회도 ‘군
수해’를 폐지하고, 군 예산만
주고 민간주도로 행사를 지르
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행정’, ‘돈 버
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실
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관을 개설, 갈라진
민심에 ‘주민의식’을 불어넣
어 군민화합으로 승화,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공정행정과 직원 상호
간에 ‘스트레스 안 주고 안 받
기’ 운동으로 신바람 나는 공
직사회를 만들어 농촌을 극대
화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연구기관 개설, 농산물 유통센
터 건립 등 농가 소득증진에
앞장하겠습니다.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주민들
을 두고, 군 예산이 외지로 유
출되는 것을 방지해 경쟁력 있
는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신효성 없는 관내 활동을 최
소화하고, 군 이익을 위해 예
산 확보, 기업유치 등 대외합
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누리는



학력

- 고령초등학교 졸업
- 고령중학교 졸업
-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 졸업
- 대구 미래대학교 졸업

경력

- 국민회헌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고령군선거대책 부위원장 겸
대외협력위원장
- 전) 바르게살기운동고령군협의회
회장
- 전)고령신문 대표이사
- 전)고령성주신문 대표이사
- 전)고령군재민회 협회 실무부회장
- 전)고령군축곡협회장
- 전)고령군선진화협의회
사업본부장

수상

- 바르게살기 금장 수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창

자세보다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고령군은 두말한 자제수입이
지속된다면, 소멸될 수도 있다가
위기감에 고령군 미래를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고령신문 3월 21일자 1면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고령신문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다른 제목 크기, 편집 등을 사용해 차별화하고, 1면 상단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출마선언문을 보도하며 특정 후보자만 기사 제목의 크기나 편집 등을 달리하여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하여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함

사례 6.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사례)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놓은 정책” 눈길

한옥문, 두 가지 형태 공약
국지도 1028·1022호선 개통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유치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자가 내놓는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매일 오전 ‘한옥문의 화든 프로젝트’와 ‘시민이 행복 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옥문의 화든 프로젝트’는 희망의 양산, 든든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양산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한옥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은 양산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



한옥문 예비후보

을 정책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처음 시민들 에게 공개한 화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공약은 ‘어 유로운 30분 양산’이라는 주제로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대개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의 국지도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국지도1028호선(웅상~상북)과 1022호선(들금~원동) 사업과 웅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철도 개통 사업 추진이다.

여기에도 동면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국도3호선 개통까지 양산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화든 프로젝트 두 번째는 ‘지속 성장도시 양산’을 위해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및 유치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탄성소재활성화벨트사업’과 연계해 양산의 산단에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전기자동차 패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한옥문의 일상공감을 통해 내놓은 공약 또한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옥문 후보가 내놓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과 ‘중고생 버스요금 100원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그 실현 가

능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기대치가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도 일부의 ‘외지인 한옥문의 한계’라는 지적에 오히려 양산 출신 후보들보다 더 양산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한옥문 후보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워하는 분위기가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내놓은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옥문 후보의 릴레이 공약 공개와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내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주도해가겠다는 의지 표명에 시민들은 공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12년 의정활동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지금의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며 “선거 기간 지속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산 시정의 책임자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물금읍 에이스사우나 건물 9층에 자리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양산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21.8×12.5)cm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편향된 표현을 사용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기사(3월 25일 자 3면 “12년간 의정활동 통해 내

놓은 정책” 눈길)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8조(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 및 선거 기사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 기사) 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관련하여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게재하여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사례 7.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사례)

‘안 떨어지게 지지해 주세요’ 낮 뜨거운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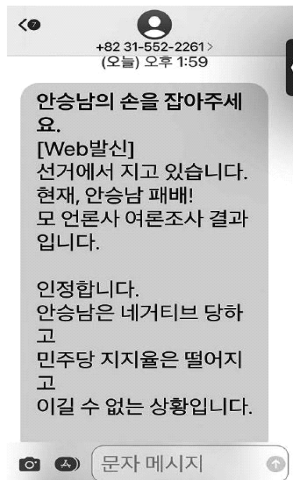
전장터에선 진영의 사기 저하를 차단하기 위해 불리한 상황을 숨기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자 도리라는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오히려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드러내 놓고 유권자들에게 읍소하고 나서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고 깃털처럼 가볍다’고 지적.

경기도의 한 매체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들 간 실시한 ‘구리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 48.0%,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 40.4%로 백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7.6% 앞선 것으로 23일 신문 지상에 발표.

이 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안 후보는 SNS를 통해 ‘안승남 패배’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승남-안 떨어지게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유권자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평소 사용하던 ‘두손 모아’에다 ‘간절하게’를 덧붙여 호소.

이러한 문자를 접한 한 시민은 “시장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게시판에 5번 등장, 비리 의혹으로 SBS 뉴스에 연이어 보도,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는 등 동네를 뒤집어 놔다”며 “시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것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사람이 염치도 없다”고 야멸차게 한마디.



안승남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시민은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전에 조사한 것인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패배를 인정했다면 전의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어떤 계락을 숨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며 “도망가는 건 패배한 것이 아니니 차라리 주상계(走上計)를 쓰는 게 어떨지”라고 비아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리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

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3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 구리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감정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사를 게재하여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사례 8.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경고 사례)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지난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1위 차지

의령신문 의령정론
경남통계뉴스 3차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 3명 오태완
서진식 김경민 순
오태완 군수 공정운영평가
과반 넘는 56.0% 긍정평가

의령군수 제2차 여론조사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3사가 공동으로 17차(마지막 1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5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 30.8%,

김경민 전 국회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가 2위, 김경민 전 국회의원 3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태완 전 군수의 공정 운영평가 조사결과, 긍정평가가 56.0%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평가는 34.3%, 미응답 9.7%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수 성향의 강한 의령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국민의힘 78.0%, 더불어민주당 12.1%, 정의당 1.0%, 기타 다당 정당 2.1%로 지지하는 정당은 오태완 4.7%, 김경민 1.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여론조사에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가 공동으로 17차(마지막 1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5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 30.8%,

의령군수 후보 적합도
Q. 귀하께서는 국민적합 소속 의령군수 후보로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2% 오태완, 30.8% 서진식, 24.5% 김경민
기타 다당 후보 1.0%, 미응답 9.7%, 2차 조사 결과 1.2%

의령군정 운영 평가
Q. 귀하께서는 오태완 의령군수의 군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평가 56.0%, 오태완 군수 운영평가 34.3%, 부정평가 9.7%
기타 다당 후보 1.0%, 미응답 9.7%, 2차 조사 결과 1.2%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 3사가 공동으로 17차(마지막 1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5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 30.8%, 김경민 전 국회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가 2위, 김경민 전 국회의원 3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오태완 전 군수의 공정 운영평가 조사결과, 긍정평가가 56.0%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평가는 34.3%, 미응답 9.7%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수 성향의 강한 의령군 정당지지도 조사결과 국민의힘 78.0%, 더불어민주당 12.1%, 정의당 1.0%, 기타 다당 정당 2.1%로 지지하는 정당은 오태완 4.7%, 김경민 1.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여론조사에는 의령신문/의령정론/경남통계뉴스가 공동으로 17차(마지막 1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령군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5명의 후보들 중 오태완 군수가 39.2%,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 30.8%, 김경민 전 국회의원 24.5%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오태완 군수가 1위, 서진식 전 경남도의회가 2위, 김경민 전 국회의원 3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의령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후보자 간 차이를 과장한 그래프를 게재하여 경고를 결정함

사례 9.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모두가 안전한 울산 남구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핵심 가치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죽하면 울산지방방위에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사고 전담 재판부가 신설될 정도였겠는가. 그렇기에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지만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다. 다행히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울산 남구에서는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남구에서는 ‘선제대응 안전남구’라는 규정 지표 아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전문가 채용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대형공사장 긴급현장 안전점검 △작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종사자의 소통을 위한 안전보건 게시판 운영 등 여러 준비를 했다. 또 안전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들을 정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 행정통신망에 신설된 중대재해 안전·보건 게시판은 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대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의견 청취 창구를 개설했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래서 남구 소속 모든 직원

특필기고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관련 법령과 규정 및 매뉴얼을 비롯해 각 사업장별 의무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등 참고자료, 유사업종·작업 사고 내용과 예방대책 등도 게시해 공유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정된 인원만 참석해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달리 모든 종사자가 수시로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회사에서 나름대로 민간의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안타까운 사고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빈틈과 사각지대는 어디에도 있기 마련이다.

32만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기에 고

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안전의 성패는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 표출’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더라도 해도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자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국의 선진기업들을 예로 들면, 주요 행사나 회의에서는 항상 안전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최고경영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관례화되어 있는 등 조직 구성원 모두가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 남구는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구성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기반 구축과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며 ‘선제대응 안전남구’를 만들고자 ‘울산 남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이를 통해 우리 남구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0번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알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다. 모두가 무사히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 남구는 구민과 소통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19.9*17.1)cm

- ▶ 선거일 전 90일 이내인 시점에 울산 남구청장이 지역구 정책이나 성과 홍보 등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고문을 게재하여 주의를 결정함

사례 10. 후보자 시정요구(경고 사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전북도청 사전투표소에서 시가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과 배우자 유광수 씨(왼쪽), 송하진 도지사와 배우자 오경진 씨가 투표를 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 “소중한 참정권 행사하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 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24.1*16.1)cm

- ▶ 피시정요구인은 현직 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함께 보도하였음. 이에 시정요구인은 특정 예비후보자의 행보만을 부각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함. 선심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현직 도지사의 사진과 함께 배치하였음을 이유로 경고 결정함

3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및 홍보 활동 강화

위원회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의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선거 기사심의제도를 안내하고, 언론인으로 하여금 취재 및 보도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심의사례를 공유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예방하고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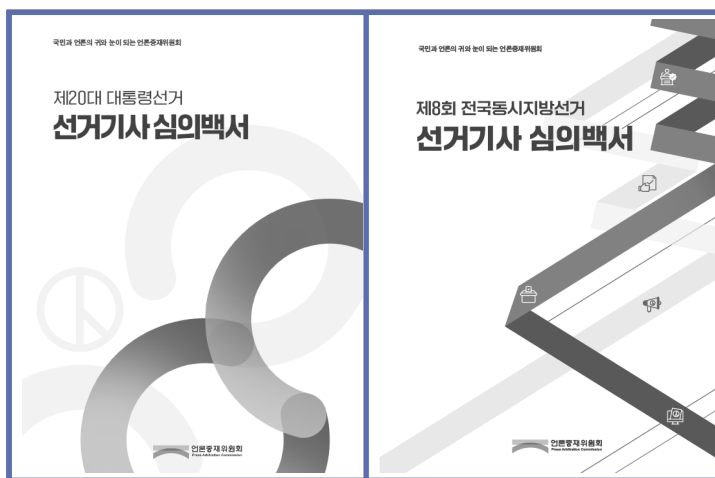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현황

일자	대상	주제
2022. 2. 11.	언론인 45명	선거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 - 조정 및 심의사례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2022. 4. 29.	충청, 대전 지역 언론인 10명	알면 유용한 선거기사심의 - 6·1 지선 대비
2022. 5. 3.	언론인 30명	선거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 - 조정 및 심의사례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또한 위원회는 각 선심위 운영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보도자료를 배포해 선심위 운영 성과를 홍보하고, 결산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보도 또는 후보자 관련 저술광고로 인한 심의기준 위반이 지속되었음을 강조, 언론사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단순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양대 선거 선심위 운영을 마무리하며 각 선심위 활동 내역을 망라한 〈선거기사 심의백서〉를 발간하였다. 선심위가 의결한 모든 사례와 통계를 수록하여 선심위 결정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심의위원 종합평가를 통해 불공정 선거보도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고, 심의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기사심의백서



4 양대 선거 선심위 운영결과와 실무 반영

위원회는 심의대상 언론사에 배포되는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2022. 11. 30. 발간)의 수록 사례를 양대 선거에서 발생한 최근 사례로 교체하여 발간하였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한 심의기준을 우선 배치하여 취재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또한 위원회는 양대 선거 선심위 운영 과정에서 발견한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였다. 심의위원 추천 관련 서식이나 시정요구서 서식 등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구체화하였고, 위촉 절차의 정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실시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기 위촉된 심의위원이 보궐선거의 심의위원으로도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심청구 시 원심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22년 전국적 규모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됨에 따라 양대 선거 선심위의 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총 85건을 심의·의결하여 역대 대통령선거 선심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일관된 심의기준 적용에 노력을 기울였다. 칼럼의 경우 내부필진에 의한 것인지 외부기고문인지 여부를 구분하거나, 여론조사보도에서 위반이 발생한 부분이 보도의 제목인지 본문인지를 구분하는 등 현행 심의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심의기준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심위 결정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심위는 일부 언론이 후보자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특정 후보자의 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지면에 옮기거나, 일부 지역 언론이 특정 후보자의 동정이나 선거 공약을 부각하는 홍보성 기사를 반복 게재하여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7건 등 전체 65건의 결정 가운데 10건(15.4%)이 높은 수위에 해당하는 경고결정문/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위원회는 두 개의 선심위를 병행하여 운영한 만큼, 대내외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심위 운영을 도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심의기구 간 간극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업무 현안을 공유하였고, 각 심의기구에서 적발한

심의기준 위반 사례, 후보자 시정요구 현황, 선거 관련 이슈 등을 수시로 공유하였다. 대내적으로는 회의 개최 시 마다 각 선심위의 의결현황과 비슷한 안건의 처리 결과를 참모자료로 제공하여 선심위의 일관된 판단을 도왔고, 주기적인 실무자 안전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원간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였다.

선심위 운영을 마무리한 뒤 위원회는 각 선심위 운영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심의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보도자료 배포와 백서 발간을 통해 선심위 운영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양대 선거에서 발생한 사례를 반영하고자 언론사 배포용 교육교재 등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을 개정하여 양대 선거 선심위 운영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선심위 운영 및 심의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23년에는 개정된 규정과 축적된 심의업무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재·보궐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심의기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내부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심의원 역량 제고에 주력하고자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22 ANNUAL REPORT

2022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